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07

발의연월일: 2024. 7. 12.

발 의 자:김미애·백종헌·최보윤

최수진 • 한지아 • 김선교

주진우 • 이성권 • 안상훈

조경태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자녀 복리가 위태로울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하고 있으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1년간 자녀 1인당 20만원만을 지급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유지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채권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사후에 양육비 채무자 로부터 그 금액을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양육 비 선지급이 결정된 경우 채무자 본인 동의 없이 금융·신용·보험정 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명단공개 사전 소명기간을 단 축하는 등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이행강제력을 강화함.

주요내용

- 가. 양육비 채무자 본인 동의 없이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 나.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및 출국금지 요청 사유에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고, 명단공개 사전 소명기간을 단축함(안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5까지).
- 다.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신설하고, 신청인의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조사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21조의6부터 제21조의8까지).
- 라.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반환 규정을 마련함(안 제21조의11).
- 마.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강제징수 규정을 마련함(안 제21조의12).
- 바. 양육비 선지급 및 회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도록 함(안 제21조의15).

법률 제 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5.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6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양육비 선지급

제13조제1항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본·초본의 교부를 요청하거나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그 등본·초본의 교부 요청
-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른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3.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 서의 교부 요청

제14조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6조제2항 단서 중 "제14조에"를 "제21조의9에"로,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을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금융정보등의"를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제1항) 본문 중 "불구하고 양육비"를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양육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을 "금융기관등"으로,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을 "금융정보등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14조에"를 "제21조의9에"로,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을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으로, "신용정보·보험정보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정보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

2항) 중 "제1항에"를 "제2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을 "제1항부터 제 3항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제4항에"를 "제5항에"로, "금융정보등의 제 공"을 "금융정보등의 동의, 제공"으로 한다.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 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3제1항 본문 중 "제64조제1항제1호에"를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로 한다.

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4제1항 중 "제64조제1항제1호에"를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로 한다.

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4조제1항제1호에"를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개월"을 "10일"로 한다.

제3장의2(제21조의6부터 제21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양육비 선지급

- 제21조의6(양육비 선지급 신청) ①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 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 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이하 "양육비 선지급" 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1.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 3.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 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선지급 신청 인"이라 한다)는 양육비 선지급에 필요한 범위에서 선지급 신청인과 그 가구원에 대하여 금융정보등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 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의7(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에 대하여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 요한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선지급 신청인의 주거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 하여 생활환경 및 소득자료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 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21조의9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자(이하 "선지급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채무이행 여부, 선지급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의 변동 여부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조사, 관계인에 대한 질문은 제1항의규정을 준용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조사·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

- 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및 그밖에 관련 기관·단체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라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의 범위·시기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제21조의8(선지급 신청인 등의 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의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지급 신청인과 그 가구원이 제21조의6제

- 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의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 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 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요청과 관련하여 금융정보등의 제공,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 등은 제1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 제21조의9(양육비 선지급의 결정)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21조의6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의7 및 제21조의8에 따른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기한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②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지급 기간,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양육비 선지급 금액은 제5조 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 ③ 선지급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 양육자

또는 양육비 채권금액의 변동 등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화가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선지급 신청인 및 양육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21조의10(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은 경우 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수 있다.
 -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 1. 제21조의7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2.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거나 선지급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제21조의6 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등 양육비 선지급의 사유가 상실된 경우
 -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의 양육비 채권금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하였거나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하였을 때에 는 이를 선지급 대상자 및 양육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통지하는 내용과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의11(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명령)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금을 지급받아 제21조의10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결정이 취소된 선지급 대상자에게해당 양육비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다만,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경우에는 반환을 면제하거나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을 금액을 선지급 대상 자에게 통지하여 반환받고, 선지급 대상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에게 잘못 지급된 양육비 선지급금이 있으면 그 선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복리를 위태롭게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반환을면제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의12(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 회수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② 양육비 선지급의 결정 또는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등에 필요한 경우 제13조,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의 자료 요청, 소득·재산 등에 관한 조사, 금융정보동의 제공요청 등을 할 수 있다.
- 제21조의13(양육비 선지급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 본법」 제36조에 따른다.
- 제21조의14(압류금지) 양육비 선지급금 및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을 권

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 제21조의15(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선지급 및 회수의 효율적인 처리, 기관 간 정보의 공유 등을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자료·정보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 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관계 중 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할 수 있다.
 - 1.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 2.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 ·공무원연금·공무원재해보상급여·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 금·별정우체국연금·농업직불금·농지연금의 가입여부, 가입종류, 소득정보, 부과액 및 수급액
 - 3. 건물, 토지, 자동차, 건설기계 및 선박의 공시가격 또는 과세표준 액
 - 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5. 가족관계등록부

- 6.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 7. 출입국 정보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선지급에 필요한 정보
- ④ 제1항에 따라 구축되는 전산관리시스템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다음 각 호에 따라 관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이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 1.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21조의6의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관한 사항
 - 2. 제13조에 따른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
 - 3. 제16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 조사에 관한 사항
 - 4. 제21조의7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
- 5. 제21조의15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24조제1항에 제3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 3의2. 제17조의2에 따른 자료의 파기에 관한 사항
- 6. 제21조의3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
- 7. 제21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8. 제21조의5에 따른 명단 공개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9. 제21조의15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제27조제1항 중 "제17조제5항"을 "제17조제6항(제21조의8제3항에 따라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양육비 선지급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①	제6조(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			
결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개선		
	에 관한 사항		
<u>5.</u> (생 략)	<u>6.</u>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	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① ~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①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이행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6		
업무를 수행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4. 양육비 선지급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⑦ ・ ⑧ (생 략)	⑦ · ⑧ (현행과 같음)		
제13조(비양육부・모 또는 양육	제13조(비양육부・모 또는 양육		
비 채무자의 주소 등의 자료	비 채무자의 주소 등의 자료		
요청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요청 등) ①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또는 양 육비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다음 각 호의 사항을---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본・초본의 교부를 요청 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비양육부・모 또는 양 육비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 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 <u>록표 열람 및 그</u> 등본·초본 의 교부 요청
-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 대 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에 따른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 한 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신 설>

② (생략)

제14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① 제11조에 따른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 대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한다)을 신청할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 신청을 받은 이행관리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지원원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일한

3.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요청 ② (현행과 같음)

내용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긴급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긴급 지원의 지급기간은 9개월을 넘 지 아니하여야 하고, 자녀의 복 리를 위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 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④ 긴급지원의 대상, 금액, 지급시기 등 지원기준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긴급지 원 금액은 제5조에 따른 양육 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 정한다.
- ⑤ 이행관리원의 장은 긴급지원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4조의2(긴급지원 종료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 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삭 제>

즉시 긴급지원을 종료하여야 한다.

②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 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 을 알게 되는 등 긴급지원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 화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 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알려 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알려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 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긴급지원 결정에 대한 <삭 제> 이의신청) ① 제14조에 따른 긴급지원에 관한 이행관리원의 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양육 비 채권자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여성가족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행관리원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 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

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양육비 채권자는 그 이의신 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의4(비용환수) ① 이행관리 원의 장은 양육비 채권자가 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양육비를 긴급지원 받은 경 우에는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 다. 다만, 양육비의 반환이 미 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 양 육비의 반환 기간,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5조(양육비 이행 청구 및 조사)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 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채권 추심 지원에 관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삭 제>

제15조(양육비	이행	청구	및	조
사) ①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 서를 <u>포함한다</u>)으로 통지하여 야 한다.

- 1. ~ 6. (생략)
- ② ~ ④ (생 략)
- 제16조(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 에 관한 조사) ① (생 략)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국민연금, 출입국 등에관한 자료의 제공을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도 이를요청할 수 있다.
 - ③ ~ ⑤ (생 략)

제17조(<u>금융정보등의</u> 제공) <u><신</u> <u>설></u>

<u>포함한다. 이하 같다</u>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
에 관한 조사) ① (현행과 같
음)
②
<u>제21조의9에</u>
<u>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u>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u>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u>
보등의 제공) ① 여성가족부장
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에 대한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2 -----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 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 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 가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 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 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 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 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 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제공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 가 지급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 · 보험정보를 요 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양
육비
<u>금융기관등</u>
금융정보등을
<u>제21조</u>
<u>의9에양육비 선지급이</u>
결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
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u> 금융정보등을</u>
③ 제2항에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 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여성가족부장관 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

<u>④</u> 제3항에
<u>⑤</u> 제2항제3항에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 정)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 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u>.</u>
<u>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u>
<u>항에금융정보등의 동의,</u>
제공

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
청) ①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
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지방경 찰청장(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관한 권 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 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양육비 채무자가 지방경찰청 장으로부터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력을 정지시 킬 것(이하 이 조에서 "운전면 허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요 청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 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 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 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 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 략) 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 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② ~ ④ (현행과 같음)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있다.

② ~ ④ (생 략)법률제20417호양육비이행확보및 지원에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5(명단 공개) ① 여성가 지 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 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 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①
<u>제63</u> 조의3제4항에 따른 일
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 ② ~ 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5(명단 공개) ①
11212-13(16 to 6711) (1)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
<u>제1항제1호에</u>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 양 육비 채무자에게 <u>3개월</u>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 어야 한다.

③ • ④ (생 략)

<u><신 설></u>

<신 설>

1. ~ 3. (현행과 같음)
②
<u>10일</u>
③·④ (현행과 같음)
제3장의2 양육비 선지급
<u>제21조의6(양육비 선지급 신청)</u>
①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
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
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
급(이하 "양육비 선지급"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1.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 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 3.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 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 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선지 급 신청인"이라 한다)는 양육 비 선지급에 필요한 범위에서 선지급 신청인과 그 가구원에 대하여 금융정보등의 자료 또 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신 설>

사항은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한 다.

제21조의7(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에 대하여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요구할수 있으며,소속 직원으로하여금 선지급 신청인의 주거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생활환경 및소득자료 등을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하게 할수있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21조의 의9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자(이하 "선지급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채무이행 여부, 선지급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소득·재산의 변동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조사, 관계인에 대한 질문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조사·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 급 사유의 발생, 변경 또는 상 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 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 지 · 건물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 출입국 • 병무 • 보훈급여 • 교 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 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 법원행정처, 지방자 치단체 및 그 밖에 관련 기관 ·단체의 장(이하 "관계 중앙 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 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 라야 한다.

- 5 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의 범위·시기 및 내용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⑥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 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제21조의8(선지급 신청인 등의 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의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을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지급 신청인과 그 가구원이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신 설>

의하여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의 양육비 선지급 사유 의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 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 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 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 용정보등의 요청과 관련하여 금융정보등의 제공, 금융정보등 의 제공 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 등은 제17조제3항부터 제 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1조의9(양육비 선지급의 결정)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21조
의6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신

<신 설>

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의7 및 제21조의8에 따른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기한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지급 기간,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이 경우 양육비 선지급 금 액은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 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③ 선지급 대상자는 양육비 채 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 양육자 또는 양육비 채권금액 의 변동 등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 화가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렁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관 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선지급 <u><신 설></u>

신청인 및 양육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의10(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은 경우 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제21조의7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2.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거나 선지급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제21조의6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등양육비 선지급의 사유가 상실된 경우
-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u><신</u> 설>

대상자의 양육비 채권금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육 비 선지급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양육비선지급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하였거나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선지급대상자 및 양육비 채무자에게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하는 내용과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11(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명령) ① 이행관리원의 장 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금을 지급받아 제21조의10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결정이 취 소된 선지급 대상자에게 해당 양육비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 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

 롭게 할 경우에는 반환을 면제

 하거나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을 금액을 선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 반환받고, 선지급 대상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에게 잘못 지급된 양육 비 선지급금이 있으면 그 선지 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 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 태롭게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 가 있을 때에는 그 반환을 면 제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절
 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12(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신 설>

<신 설>

양육비 선지급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여성가족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 회수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② 양육비 선지급의 결정 또는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등에 필요한 경우 제13조,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의 자료 요청, 소득·재산 등에 관한 조사, 금융정보동의 제공 요청 등을 할수 있다.

제21조의13(양육비 선지급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신 설>

<신 설>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 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 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 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다.

제21조의14(압류금지) 양육비 선 지급금 및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 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 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제21조의15(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 관은 양육비 선지급 및 회수의 효율적인 처리, 기관 간 정보의 공유 등을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자료·정보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 집·보유·이용할 수 있다.
- 1.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 2.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 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보훈급여·공무원연금·공무 원재해보상급여·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 체국연금·농업직불금·농지 연금의 가입여부, 가입종류, 소득정보, 부과액 및 수급액
- 3. 건물, 토지, 자동차, 건설기계 및 선박의 공시가격 또는과세표준액
- 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5. 가족관계등록부
- 6.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 <u>7. 출입국 정보</u>

제23조(수수료) ① · ② (생 략)

<신 설>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선지급에 필요한정보
- ④ 제1항에 따라 구축되는 전 산관리시스템은 「사회보장기 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 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 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한 다.
- 제23조(수수료)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다음 각 호에 따라 관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이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 1.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제21조의6의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여성가족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업무를 이행관리원에 위 탁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 설>

4. • 5. (생략) <신 설>

<신 설>

관한 사항

- 2. 제13조에 따른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
- 3. 제16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 자의 재산 등 조사에 관한 사 항
- 4. 제21조의7에 따른 양육비 선 지급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 항
- 5. 제21조의15에 따른 전산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 한 사항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17조의2에 따른 자료의 파기에 관한 사항
- 4. 5. (현행과 같음)
- 6. 제21조의3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제21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신 설>

<신 설>

② (생략)

제27조(벌칙) ①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 <신 설>

요청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8. 제21조의5에 따른 명단 공개 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
- 9. 제21조의15에 따른 전산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 한 사항
-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벌칙) ① 제17조제6항(제2 1조의8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거 나 타인으로 하여금 양육비 선 지급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